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374
----------	-------

발의연월일 : 2021. 7. 7.

발 의 자 : 박대수 · 이종성 · 임이자  
서병수 · 구자근 · 엄태영  
허은아 · 황보승희 · 지성호  
김선교 · 김정재 · 이채익  
김태호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고,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최근 오픈마켓 등에서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기준 확인 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내 판매·유통이 가능하여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해외구매대행을

하려는 자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거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0조 및 제26조 등).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제조 또는 수입”을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개인 사용목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하여 주문, 대금지급 등의 절차를 대행하여 해당 제품을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항 및 제6항 중 “제조 또는 수입”을 각각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조하거나 수입”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해외구매대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조 또는 수입”을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중 “제조 또는 수입”을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제조·수입”을 “제조·수입·해외구매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조 또는 수입”을 각각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

매대행”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조 또는 수입”을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조 또는 수입”을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한다.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 또는 수입”을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제조 또는 수입”을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조 또는 수입”을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조 또는 수입”을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조 또는 수입”을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조 또는 수입의”를 각각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의”로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제조 또는 수입”을 각각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 또는 수입”을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 또는 수입”을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조하거나 수입”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해외구매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조하거나 수입”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해외구매대행”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을 “수입, 해외구매대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입”을 “수입, 해외구매대행”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제조 또는 수입”을 각각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수입하는”을 “제조·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조하거나 수입”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해외구매대행”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을 “수입·해외구매대행”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조하거나 수입”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해외구매대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1호의2·제2호·제5호 및 제5호의2 중 “제조 또는 수입”을 각각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조 또는 수입한”을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한”으로 한다.

법률 제1817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3제2항 전단 중 “수입업자”를 “수입·해외구매대행업자”로 한다.

법률 제1817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10제2항 중 “수입업자는”을 “수입·해외구매대행업자는”으로 한다.

법률 제1817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16제1항 전단 중 “수입업자에”를 “수입·해외구매대행업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입업자에게”를 “수입·해외구매대행업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입업자의”를 “수입·해외구매대행업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입사업자의”를 “수입·해외구매대행업자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입업자”를 각각 “수입·해외구매대행업자”로 한다.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하거나 수입”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해외구매대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조 또는 수입”을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해외구매대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조하거나 수입”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해외구매대행”으로, “제조 또는 수입”을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입자”를 “수입자, 해외구매대행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조 또는 수입”을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한다.

제52조의2제1항제2호 중 “수입”을 “수입·해외구매대행”으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6호·제10호 및 제11호 중 “제조 또는 수입”을 각각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제조 또는 수입한”을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

매대행한”으로 한다.

제57조제1항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제조 또는 수입”을 각각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한다.

제58조제1호 중 “제조 또는 수입”을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해외구매대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살생물제품의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살생물제품을 해외구매대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④·⑤ (생략)

⑥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생략)

-----  
-----제조, 수입  
-----  
-----또는 해외구매대행-----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  
대행-----  
-----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  
-----  
-----  
-----  
-----  
-----  
-----  
-----.

⑦ (현행과 같음)

⑧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1. (생략)
2.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 8. (생략)

⑨ (생략)

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

⑧ -----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해외구  
매대행-----

1. (현행과 같음)
2.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  
행-----
3. ~ 8.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

1. (현행과 같음)
2.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

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4. (생략)

② (생략)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 금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0조제1항·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하는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행-----  
-----

3.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해외구매대행 금지 등) ① -----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

1. (현행과 같음)

2. -----  
-----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3. -----  
-----  
-----  
-----  
-----제조, 수입 또는 해

하는 경우

4.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5.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6.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7.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외구매대행-----

4. -----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5. -----  
-----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

6. -----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7. (현행과 같음)

② -----  
-----제조, 수입 또  
는 해외구매대행-----  
-----  
-----  
-----  
-----  
-----.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① 살  
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 ⑤ (생략)

⑥ 제5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  
속하여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  
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제품승  
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 요청하면 환경부령에 따라  
해당 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  
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한시적으  
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  
다.

1. 2. (생략)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① --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  
-----.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  
-----  
-----.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  
-----.

1. 2. (현행과 같음)





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 6. (생략)

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의-----  
-----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

1. (현행과 같음)
2.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

3. ~ 6. (현행과 같음)

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① -----  
-----제조, 수입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그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는 해외구매대행-----

1. 2. (현행과 같음)

②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1. ~ 4. (현행과 같음)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① -----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해외구매대행-----

있다.

②·③ (생략)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안 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2. (생략)

② 제품승인등을 받은(제25조 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또는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  
-----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해외구매대행-----  
-----

⑤·⑥ (현행과 같음)

제34조(표시·광고의 제한) ① --  
-----  
-----수입, 해외  
구매대행-----  
-----  
-----

1.·2. (현행과 같음)

② -----  
-----  
-----  
-----  
-----수입, 해외구매대행-----  
-----

살생물처리제품임을 표시·광고하거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가.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나. ~ 라. (생략)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가. (생략)

나.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 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① -----

1. -----

가.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나. ~ 라.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다. (생략)

4. (생략)

② (생략)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물질승인·제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새로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 인한 생

-----

다.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① -----

-----  
 -----  
 -----  
 -----  
 -----  
 -----  
 -----  
 -----  
 -----  
 -----

제조·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하는-----

-----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  
 -----  
 -----



물제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제6항을 위반하여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1의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  
-----  
-----  
-----  
-----  
-----  
-----  
-----  
-----

1. -----  
-----  
-----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

1의2. -----  
-----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

2.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

3.·4. (생 략)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  
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5의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  
된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6.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  
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  
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  
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  
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②·③ (생 략)

법률 제1817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의 설치·운영)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3.·4. (현행과 같음)

5. -----  
-----  
-----  
-----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

5의2. -----  
-----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6. -----  
-----  
-----  
-----  
-----  
제조, 수입 또는 해외  
구매대행한-----

②·③ (현행과 같음)

법률 제1817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의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  
음)

② -----  
-----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및 유족, 제48조의16에 따른 원인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의료기록·건강보험·살생물제품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률 제1817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10(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① (생략)  
②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제48조의16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분담금을 납부한 제조·수입업자는 지급된 구제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수입·해외구매대행업자

법률 제1817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10(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입  
· 해외구매대행업자는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법률 제1817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16(살생물제품피해구제 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분담금의 부과·징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 제조·수입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서 “원인제품사용비율”이란 조사단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구제급여 대상자

-----  
-----.

법률 제1817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의16(살생물제품피해구제 분담금) ① -----

-----  
-----  
-----

-----수입·해외구매대행업자  
에-----

-----  
-----  
-----

-----  
-----.

② -----수  
입·해외구매대행업자에게-----

-----  
-----.

③ -----

-----

가 사용한 원인제품 중 개별 제조·수입업자의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서 “원인제품판매비율”이란 원인제품의 총 판매량 중 개별 제조·수입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분담 능력이 없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제조·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⑥ ~ ⑩ (생략)

제49조(기록 및 보고)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수입·해외구매대행업자의-----  
-----

④ -----  
-----  
-----수입·해외구매대행업자의-----  
-----

⑤ -----  
-----  
-----수입·해외구매대행업자-----  
-----

수입·해외구매대행업자-----  
-----

⑥ ~ ⑩ (현행과 같음)

제49조(기록 및 보고) ① -----  
-----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해외구매대행-----  
-----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조 또는 수입한 안전확인  
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품명  
과 수량

2. ~ 6. (생략)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2년마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1. (생략)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  
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제품명 및 수  
량,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  
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  
칭과 양

③·④ (생략)

제50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

-----  
-----  
-----.

1.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  
행-----  
-----

2. ~ 6. (현행과 같음)

② -----  
-----제조 또는 수  
입하거나 해외구매대행-----  
-----  
-----.

1. (현행과 같음)

2. -----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해외구매대행-----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  
매대행-----  
-----

③·④ (현행과 같음)

제50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  
-----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시험·검사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시험·검사기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안전성, 용기, 포장 및 제조·보관시설 등에 대한 검사

2. 3. (생략)

② (생략)

제52조의2(포상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략)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  
-----  
-----  
-----수입자, 해외  
구매대행업자-----  
-----  
-----  
-----  
-----  
-----  
-----  
-----  
-----.

1.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의2(포상금)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에  
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  
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  
· 수입 · 판매 또는 유통한  
자

② (생략)

제5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併科)  
할 수 있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  
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  
로 확인을 받고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  
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  
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  
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3. (생략)

4.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

-----  
-----  
-----  
수입 · 해외구매대행-----  
-----

② (현행과 같음)

제56조(벌칙) ① -----  
-----  
-----  
-----  
-----

1. -----  
-----  
-----  
-----  
-----  
-----제조, 수입 또는 해외  
구매대행-----

2. -----  
-----  
-----제  
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

3. (현행과 같음)

4. -----

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5.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7. ~ 9. (생략)

10.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을 받고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살생물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

-----  
-----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5. -----  
-----  
-----제  
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6. -----제  
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7. ~ 9. (현행과 같음)

10. -----  
-----  
-----  
-----  
-----  
-----  
-----  
-----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  
행-----

11. -----





계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9.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유사성을 인정받거나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0. 제25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품유사성을 다시 인정받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1. 제27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9. -----  
-----  
-----  
-----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10. -----  
-----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11. -----  
-----  
-----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12. -----  
-----  
-----  
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

13. -----  
-----  
-----

<p>표시하고 <u>살생물처리제품을</u> <u>제조 또는 수입한 자</u></p> <p>14. (생략) ②·③ (생략)</p> <p>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 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p> <p>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 제품을 <u>제조 또는 수입한 자</u></p> <p>2. ~ 7. (생략)</p>	<p>-----<u>제</u> <u>조, 수입 또는 해외구매대행-</u> -----</p> <p>1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8조(벌칙) ----- ----- ----- -----.</p> <p>1. ----- ----- ----- ----- ----<u>제조, 수입 또는 해외구</u> <u>매대행</u>-----</p> <p>2. ~ 7. (현행과 같음)</p>
--	---